



라면 관리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라. 樹立時期

- 국유재산
  - 관리계획 작성지침 시달 : 전년도 6월 말까지
  - 관리계획 작성 제출 : 전년도 12월말 까지
  - 관리계획 확정 통보 : 익년도 2월말까지
- 공유재산 : 예산편성전에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며(당년도 또는 익년도 공히 예산편성 전에 수립), 변경계획도 이에 준함.

#### 마. 公有財産管理計劃의 議案處理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거 의안으로 상정될 때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同意나 動議가 아닌 『議決』案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한가지 동 『同意』는 공법상으로 승인과 같은 것으로 법령에 직접 동의로 되어 있어 수정이나 변경, 원안과 다른 대안결정을 할 수 없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는 경우가 同意이며, 그 예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지방의회 동의시의 면제조항과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관계 자치단체의 同意를 얻으면 그 구역 밖의 자치단체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움직일 동 『動議』는 합의체 기관인 의회에서 그 구성원인 의원만이 발의하는 사항을 動議라고 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에 관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다.

그러나 議決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의안을 문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회기중에 제출하고 의장은 필요한 절차에 의거 안건을 공고하는 등 형식이나 절차가 同意나 動議와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는 못하나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대상에서 일부를 제외시켜 의결할 수는 있다.

【사 례】 :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의회의결을 얻은후 당초면적보다 확대매입할 경우 의회에 변경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2000. 2. 7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 당해 의회의결을 받은 면적보다 확대되는 면적의 규모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미한 재산의 증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대상이라 할 것임 